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방식 및 절차의 조례 위임〉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7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4. 21.

다. 회부연월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u>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u>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u>

현행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종류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며, 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¹⁾로는 ①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

1)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선임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서울·부산·대구·충북), ②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광주·경기·전북·전남·경남) ③추천정당별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강원), ④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인천·대전·충남·경북·제주), ⑤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세종), ⑥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울산)이 있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원 선임방식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여 위원회 위원의 선임방식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이를 통해 비회기 중에도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위원 선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국회법」은 ① 상임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며, ②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하며,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선임방식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 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구분	선임방식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제외)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정보위원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선임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함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선임방식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개정안은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원 선임 방식은 크게 ①현행과 같이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과 ②의장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있어 위원 선임에 앞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둘 것인지는 여부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전체 의원이 위원 선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조례로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전

체 의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교섭단체의 구성·운영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243개 지방의회 중 73개(광역 15개, 기초 58개)에서만 교섭단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로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지방의회에서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지방의회 간 통일적인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섭단체를 통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회의를 통한 의원 간 협의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34